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예선대회 개최요강

2024. 3.



광주광역시체육회
GWANGJU SPORTS COUNCIL

목 차

I. 목 적	1
II. 대회개요	1
III. 참가요령	2
IV. 전국체전 변경사항	10
V.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검 도	17
2. 골 프	17
3. 궁 도	17
4. 근대 5종	18
5. 농 구	19
6. 당 구	19
7. 댄스스포츠	20
8. 력 비	20
9. 레 슬 링	21
10. 롤 러	22
11. 바 독	22
12. 배 구	23
13. 배드민턴	23
14. 보디빌딩	24
15. 복 싱	25
16. 볼 링	26
17. 사 격	27
18. 산 악	28
19. 세팍타크로	28
20. 소프트테니스	29
21. 수상스키웨이크보드	29

22. 수 영	30
23. 스 퀴 시	32
24. 승 마	33
25. 씨 림	33
26. 야구 · 소프트볼	34
27. 양 궁	34
28. 에어로빅합합	35
29. 역 도	35
30. 요 트	36
31. 우 슈	37
32. 유 도	38
33. 육 상	39
34. 자 전 거	42
35. 조 정	43
36. 철인 3종	44
37. 체 조	45
38. 축 구	45
39. 탁 구	46
40. 태 권 도	46
41. 텍 견	47
42. 테 니 스	48
43. 카 누	48
44. 펜 싱	49
45. 핀 수 영	50
46. 하 키	51
47. 핸 드 볼	51
VI. 각종서식	52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광주광역시 예선대회 개최요강

I. 목 적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광주광역시 대표선수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II. 대 회 개 요

○ 대 회 명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예선대회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 10. 11.(금) ~ 10. 17.(목) <7일간>, 경상남도

○ 예선대회기간 : 2024년 3월 ~ 7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일원

○ 주 최 : 광주광역시체육회

○ 주 관 : 해당종목단체

○ 후 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기종목 : 49개 종목(정식 47, 시범 2) ※ 시범: 합기도, 족구

○ 종 별 :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 개최방법 : 경기종목별 개최

※ 단일팀 또는 전국규모대회 성적으로 대표선수(팀) 선발시 예선대회 미개최

※ 기록종목의 경우 선수 개인별 기록 평가전 개최 가능

※ 예선대회 개최 여부는 대회운영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개최

Ⅲ. 참가요령

※ 대표선발 후 참가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른다.

1. 경기방법

가. 단체팀은 팀별대항전, 개인전 및 기록경기는 개인 대항전으로 실시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토너먼트 경기로 하되 동순위자 순위전(3, 4위전 또는 5, 6, 7, 8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 2)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단체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 및 개인체급종목의 시드제 적용은 해당 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 3) 승부는 경기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다. 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전국규모대회 성적으로 대표팀(선수)을 선발 할 수 있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종목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나.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별 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본회 예선대회 개최요강에 의한다.

※ 특별한 경우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3. 참가자격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참가요강 기준>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목별 선수등록을 하여 전국체전에 참가 할 수 있는 자

※경기임원(감독, 코치)은 참가신청마감 이후에도 추가 등록 가능

나. 종목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 1) 경기부문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을 거치지 아니한 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종목단체장의 추천으로 2023년 또는 2024년 전국대회 공식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종목단체 선수선발위원회 등의 결정으로 대표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 2) 단일팀으로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종목은 예선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 이외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전국체전요강에 의해 전국체전 출전이 가능한 선수는 예외로 한다.

다. 18세이하부 선수 참가자격

- 1) 18세이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재학 중인 시·도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선수는 주민등록상의 시·도로 등록된 클럽*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 「경기인등록규정」 제2조 제13호: “클럽”은 스포츠클럽, 체육회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체육시설 및 체육관 소속의 단체 등을 말한다.

2) 종별 구분 없이 일반부만 실시하는 종목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선수는 재학 중인 시·도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선수는 1)항 적용]

3) 18세이하부가 있는 종목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대학부나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4) 학생선수(‘체육특기자, 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이하 같다.)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유급 또는 재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되, 유급생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5) 학생선수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에서 전학 및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 미만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대회 개시일 기준 만 1년 미만) 2023. 10. 11. 이후 변경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① 교육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 ② 고등학교 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타 시·도로 전학을 허용한 확인서(공문)를 발급받았을 경우
- ③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다만, 당해 시·도 관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나 클럽 내 전문선수반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타 시·도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미적용
- ④ 전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선수만 먼저 전·출입을 하고 차후에 나머지 가족이 전·출입을 하였을 경우 미적용
- ⑤ 학생선수의 가족 중 해당 시·도에서 타시·도로 직장 내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된 경우

- ⑥ 학생선수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폐지 및 신규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된 경우. 다만, 반드시 전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지한 이후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야만 적용

* ⑤, ⑥항 교차적용 가능

-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학생선수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 2에 의거 인정되는 학생선수의 경우

- ⑧ 타 시·도 전학(이적)관련 전 소속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또는 시·도 체육회에서 인정할 경우

* 타 시·도 전학(이적)에 따른 참가 허용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시·도 체육회간 협의 하에 제출 필요

라. 대학부 참가자격(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대학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된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한다.

- 1)-1 대학부가 있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선수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등록지 시·도

② 중·고 연고지 시·도

③ 출생등록기준지(해당종목 : 육상,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 2)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단체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대학팀은 소속된 시·도의 단일 대학팀으로 참가한다.

- 3) 대학부가 없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학이 소재한 시·도에서 졸업하였을 경우 대학 소재 시·도로 참가

② 중·고 연고지 시·도

③ 등록지

④ 출생등록 기준지

- 3)-1 실업선수로 등록한 선수가 대학에 재학 중이라도 대학부 종별이 없는 종목에 한하여 일반선수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 4) 한국체육대학교 선수와 용인대학교 선수가 대학부가 있는 개인경기 종목(육상,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등)에 참가하는 경우 출생등록지 또는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졸업한 연고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으며, 테니스, 배드민턴 등과 같은 개인

경기단체 종목의 경우 한국체육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대학부 단체전에 등록된 시·도로 출전할 경우 잔여선수는 출생지 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5)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6)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학교) 인원으로만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해당경기종목 :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스쿼시 이상 14개 종목)

7) 사격, 볼링, 체조 종목의 단체전과 조정, 카누 종목의 단체전 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도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8) 대학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군 입대를 위한 휴학자 제외)

9) 대학부 또는 일반부(대학부 포함)에 참가하는 대학팀은 당해 연도 전국규모대회* 1회(단일 리그를 운영하는 경기종목일 경우 1년간 1회 이상) 이상 참가실적이 있는 단일팀이어야 한다. 단, 전국체육대회는 참가실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종목: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 전국규모대회는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관리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회원종목 단체 또는 전국규모연맹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전국의 등록선수(팀)를 그 참가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군인단체(국군체육부대는 2항 적용)는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주둔지 시·도로 참가한다.
- 2) 국군체육부대 단체종목은 개최지로 참가한다. 다만, 개최지 시·도로 참가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주둔지로 참가하지 아니한 종목은 이전 대회의 종합순위 최하위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2-1) 국군체육부대 단체종목의 소속선수 전원이 군인간부선수(부사관 이상)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일반부 실업팀 단체경기종목의 참가자격 바항 5)호를 적용한다.

3) 개인경기종목(개인전만 실시하는 종목)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참가한다.

① 출생지 시·도 또는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졸업한 연고지

②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졸업하지 않은 경우 중학교 재학기간의 연고지로 한다.

이때 중학교 연고지가 다를 경우 졸업이전의 연고지로 참가할 수 있다.

③ 입대 당시의 등록지 시·도 (다만, 대학졸업과 동시에 입대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단, 군인간부선수가 상기조항 시·도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거주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4) 개인경기단체전 종목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참가한다.

- ① 출생지,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졸업한 연고지 또는 주둔지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 ②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졸업하지 않은 경우 중학교 재학기간의 연고지로 한다.
이때, 중학교 연고지가 다를 경우 졸업이전의 연고지로 참가할 수 있다.
- ③ 입대 당시의 등록지 시·도(다만, 대학졸업과 동시에 입대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단, 군인간부선수가 상기조항 시·도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거주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ㄱ) 출생지, 주둔지, 거주지 시·도로 참가할 경우

- 출생지, 주둔지, 거주지 시·도 일반선수와 혼성하여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 출생지, 주둔지, 거주지 시·도 단일팀에 군인선수를 포함하여 단일팀 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으며,
- 출생지, 주둔지, 거주지 시·도 소속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도로 참가할 경우

-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도 일반선수와 혼성하여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도 단일팀에 군인선수를 포함하여 단일팀 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으며,
-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도 소속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5) 3항 및 4항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잔여 선수는 개최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바. 일반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동일 시·도 소속으로 2년 이상 참가하여야 타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단, 학생선수와 군인선수는 별도의 참가자격에 의한다.)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부 선수가 타 시·도 소속으로 이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소속팀의 해체로 인해 부득이 소속기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장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타 시·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일반부 선수가 동일 시·도 소속으로 2년 미만의 선수 활동 시에도 선수 당사자와 현 소속기관장, 변경 소속기관장의 3자간 합의하에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개인경기종목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3) 일반부만 있는 경기종목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

학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4) 일반부에 참가하는 임원, 선수는 타 시·도의 임원(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18세이하부, 대학부 포함)로 참가할 수 없다.

5) 단체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단체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 단일팀만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나) 일반부에 참가하는 실업팀은 대회직전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2회 이상 참가실적이 있는 단일팀이어야 한다.(단일 리그로 대회를 운영하는 경기종목의 경우 2년간 2회) 단, 전국체육대회는 전국규모대회 참가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군체육부대 단체경기종목은 예외로 한다.

다) 당해 연도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신설팀, 해체된 팀 소속의 선수를 선발한 신설팀은 반드시 1회 이상의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이때 팀 창단 후 전국규모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참가할 수 없다.

라) 당해 연도 전국규모대회란 당해 1월 1일부터 전국체육대회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를 말한다.

6) 개인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등록지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나) 출생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참가하되, 주민등록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 기타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등록지 시·도

② 중·고 연고지

③ 최초등록지

④ 주민등록지(만3년 2월 28일 이전)

라)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직장) 인원만으로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실업팀의 참가는 단체경기종목 실업팀 참가요령에 따라 등록지로 참가한다.

[해당종목(14종목) :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스쿼시]

- 마) 사격, 볼링, 체조 종목의 단체전과 조정, 카누종목의 단체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도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 사. 동일인이 1개 경기부문 이외의 타 경기 부문에 참가 할 수 없다. 경기부문이라 함은 육상, 수영, 축구 등의 경기분야를 말한다.(예 : 레슬링 경기부문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유도 등의 타 종목에 참가 할 수 없음)
- 아. 개인경기 단체전에 단일팀의 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그 단체전에 소속된 선수(참가 신청하지 않는 선수 포함)는 별도의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한국체육대학, 용인대학 및 군인선수는 별도로 정한 참가요령에 의한다.
- 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의 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 참가는 참가 신청 마감 당시의 소속으로 한다. 단, 군인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하여 단일팀을 형성할 때는 소속팀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출생지, 중·고연고지로 출전할 경우 미적용)
- 차.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우선권을 가진 시·도가 특정선수의 타 시·도 선수 출전을 막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후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시·도는 차기대회 당해 세부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 카. 2개 시·도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선수의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는 차기대회 당해 세부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4. 예선대회

- 가. 예선대회는 종목단체의 실정에 따라 본 대회 개최요령에 준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나. 예선대회에 참가하는 유급선수는 해당 대회의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 다. 종목단체별로 대회기간, 경기일정, 참가신청 기간, 열람기간 및 대표자 회의 일정 등을 명시하여 대회참가신청서를 발송한다.

5. 참가신청

- 가. 신청마감 : 본회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종목단체에서 정한 별도 기한
- 나. 장 소 : 해당 종목단체
- 다. 신청방법 : 해당 소속별 책임자 직접 제출(필요시 FAX 제출 후 반드시 확인)
- 라. 참가신청 :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 마.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종목단체별 소정 양식)

2) 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 해당선수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생선수는 학교장 또는 대학총장 발행의 재학증명서 1부 및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출생지로 참가하는 자는 기본증명서 1부

② 현 거주지로 참가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표 1부
(단, 거주일자가 명시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③ 군인선수 또는 단체는 부대장 발행의 복무확인서와 주둔지 확인서 각 1부

④ 개인 경기단체전에 참가하는 팀은 소속 기관장의 재직증명서 1부

바. 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1) 전국체전 기간 중 또는 개최 월에 국제대회 출전 준비를 위한 훈련 참가 요청 시에는 사전에 해당 시·도 지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대회 개막 전일까지)

2)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되어 참가 신청된 선수를 교체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대회 개막 전일까지)

6. 대회 개최요령

가. 전국체육대회 예선대회는 해당 종목단체의 경기운영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예선대회를 개최하는 경기단체는 예선대회 개최 요강 및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2주일 전에 광주광역시체육회로 대회운영팀으로 제출하고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종료 후 경기결과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앙대회 출전 및 국제대회 참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선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종목단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도자·선수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등록 규정을 준용하며,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의해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나. 시범종목(세부종목 포함) 대표선수 선발은 종별별 1인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종목단체장은 반드시 본회의 사전 승인 후 대표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IV. 전국체육대회 변경사항

1

신규 종목 신설 ☑ (1년 유예)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 ① (주짓수) ☑ 시범종목 * 경기일수 3일
- (남일부) -62kg, -69kg, -77kg, -85kg(남 최대 4명)
 - (여일부) -48kg, -52kg, -57kg, -63kg(여 최대 4명)
- ② (댄스스포츠) 브레이킹 ☑ 시범종목
- (남일부) 시·도별 최대 2명, 경기일수 1일 증가

2

시범종목 전환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 ① 관련 규정 :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 제29조(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④항

제29조(경기종목) ④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에 8개 미만의 시·도가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 전국체육대회(47) : 육상, 수영, 축구... '생략'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태권

- ② 해당종목 : 7개 종목 내 18개 세부종목 * 대회 실제 참가 기준

연번	종목명	종별	세부종목명	참가 시도
1	댄스스포츠(3)	18세이하부	룸바(R)	4
2			삼바(S)	4
3			차차차(C)	4
4	보디빌딩(2)	남자일반부	라이트헤비급90kg	6
5			헤비급90kg이상	5
6	복싱(1)	남자대학부	라이트플라이급	5
7	요트(2)	18세이하부	국제420급	5
8			국제윈드서핑	6
9	자전거(6)	여자18세이하부	4km단체추발	6
10			개인도로단체	4
11			단체스프린트	7
12			스프린트	7
13		여자일반부	500m독주	7
14			단체스프린트	7
15	카누(1)	남자18세이하부	k4-1000m	5
16	핀수영(3)	남자18세이하부	계영-400m	6
17			표면-100m	6
18		여자18세이하부	계영-400m	7

3

정식종목 전환

- ① 양궁(컴파운드)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 세부종목은 종목 육성 필요성,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 ② 태권도(품새)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 세부종목은 종목 육성 필요성,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 ③ 합기도(대련, 호신술) ☒ (1년 유예)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예정
 ▪ (대련) 남 18세이하부, 남 일반부, 여 18세이하부, 여 일반부
 ▪ (호신술) 남 18세이하부, 남 일반부, 여 18세이하부, 여 일반부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운영 관련 문제 발생 시 정식종목 전환 재검토

4

세부종목 신설, 변경, 분리 등

- ① 스쿼시(개인전 신설)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 운영
 ▪ 18세이하부(남·여), 일반부(남·여)
 (당초) 단체전 ⇨ (변경) 단체전, 개인전(신설)
- ② 에어로빅 힙합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운영
 ▪ (당초) 에어로빅 혼성 2인조(남1여1) ⇨ (변경) (힙합) 남 개인전(남1), 여 개인전(여1)
- ③ 복싱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운영
 ▪ 남대부(-49kg)(정식), 남일부(-49kg)(시범) ⇨ 남일부(대학포함)(시범) -49kg
 ▪ 여18세이하부(-51kg, -60kg, -75kg) 3체급 신설 ☒ 시범종목
☒ (조건)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10개 시도 미만이 출전하는 해당 체급 폐지
- ④ 카누 ☒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예정(1년 유예)

종목		당초				변경			
		18세이하부		일반부		18세이하부		일반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K-1	1000M	0		0		0		0	
K-2	1000M	0		0		0		0	
K-4	1000M	0		0					
C-1	1000M	0		0		0		0	
C-2	1000M	0		0					
K-1	200M	0	0	0	0				
K-2	200M	0		0					
C-1	200M	0		0			0		0
K-1	500M		0		0		0		0
K-2	500M		0		0	0	0	0	0
K-4	500M		0		0	0	0	0	0
C-1	500M					0		0	
C-2	500M					0	0	0	0
소계(24)		8	4	8	4	7	5	7	5

5

확정배점 변경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종목	당초	변경(안)	비고
역도	9,100점	<u>10,500점</u>	·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4조 6항 · 도핑으로 삭감된 확정배점 환원(정상 개최 2년 경과)
수영	10,500점	<u>12,000점</u>	
레슬링	12,000점	<u>13,600점</u>	
택견	-	<u>3,600점</u>	· 시범종목 9년(2011년~2019년) · 정식종목 4년 운영(2020년~2023년) · 전국체육대회 평균 13시·도 이상 참가 · 확정배점 최초 부여
에어로빅힙합	9,100점	<u>10,500점</u>	· 세부종목(5⇒6)증가, 전국체전 14개 시·도 참가 · 힙합종목 선수 및 참가 증가(3년간 약 48% 증가) · *(21년 264팀 1,846명, 22년 306팀 2,145명, 23년 432팀 3,167명)
산악	4,500점	<u>6,600점</u>	·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 6세부종목 운영: 3개(리드, 불더, 스피드) × 2(남·여)

6

참가자격 변경 ☒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행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참가자격	○ 일반부 참가자격 - 개인경기종목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u>고등학교</u>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 일반부 참가자격 - 개인경기종목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u>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직장운동경기부로 취업한 자</u>는 참가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실업팀에 입단하여 선수 활동을 사례 증가 반영(탁구)
참가자격	6. 참가신청 마. 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u>4) 선수를 제외한 경기임원(감독, 코치)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등록 규정을 필한 자에 한하여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u>	6. 참가신청 마. 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u>“삭제”</u>	중복조항으로 삭제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핸드볼	[선수단 규모] ▪선수단 <u>15명 이내</u>	[선수단 규모] ▪선수단 <u>16명 이내</u>	▪국제핸드볼연맹(IHF)경기규칙 준용
골프	-	[참가자격] ▪참가 신청된 선수가 <u>프로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프로 자격을 획득하여 아마추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대회 개막 전일까지)</u>	▪참가등록 이후 프로골프 선수로 전향하는 선수를 대신 교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카누	[참가자격] •2023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각 시·도체육회 예선을 거친 남·여 선수로서 C2, K2, K4의 경우 <u>18세이하부는 단일팀이어야 하며, 일반부는 단일팀이 아니어도 무방함.</u> ▪참가인원 •1인 2종목 이내 참가	[참가자격] •2023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각 시·도체육회 예선을 거친 남·여 선수로서 C2, K2, K4의 경우 <u>18세이하부와 일반부는 단일팀이 아니어도 무방함.</u> ▪참가인원 •1인 2종목 이내 참가 <u>단, 단체종목 (K-4)에 한하여 1인 2종목 이내 참가규정에서 제외함.</u>	▪C2, K2, K4 사·도 참가율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18세이하부 참가 완화
우슈	[참가인원] 가.투로 (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 -감독, 주무, 코치 외 시·도별 4명 이내. <u>다만 18세 이하부는 시·도별 선수 2명 이내 참가</u> 나.산타 : <u>코치외 체급별 1명. 다만 남일부는 총 5체급 중 시·도별 최대 4체급만 참가하고, 개최지는 전종별 전 체급 참가 가능, 18세 이하부는 총 3체급 중</u>	[참가인원] 가.투로 (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 -감독, 주무, 코치 외 시·도별 4명 이내. <u>다만 18세 이하부는 세부종목에 따른 시·도별 선수 3명 이내 참가</u> 나.산타 : <u>남일부, 18세이하부 감독, 주무, 코치 외 체급별 1명</u>	▪쿼터제 폐지

	<u>시·도별 최대 2체급만 참가하되 개최지는 전종 별 전 체급 참가 가능</u>		
	[세부종목 변경] ▪투로(18세이하부) <u>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u>	[세부종목 변경] ▪투로(18세이하부) <u>장권·도술(곤술)전능,남권· 남도전능, 태극권전능</u>	▪아시안게임 출전종목(2종목) 기준으로 변경 ▪1,2차 시·도우슈협회 의 견
근대5종	[세부종목 변경] ▪펜싱, 수영, <u>승마</u> , 레이저런	[세부종목 변경] ▪펜싱, 수영, <u>장애물</u> , 레이저 런	▪국제경기규칙 변경
	[참가자격] <u>다. 국가대표로 올림픽 및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출 전선수는 대회 출전일로부 터 2년간은 5종 경기에만 출전하여야 하며, 2년 이후 부터는 4종 경기 또는 5종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u>	[참가자격] <u>다. 국가대표로 올림픽 및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출 전선수는 대회 출전일로부 터 2년간은 5종 경기에만 출전하여야 하며, 2년 이후 부터는 4종 경기 또는 5종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삭 제)</u>	▪불필요 규정으로 삭제
철인3종	[참가인원] 각 부별 감독, 코 치, 주무 외 선수 3명 이내	[참가인원] 각 부별 감독, 코 치, 주무 외 선수 3명과 <u>남녀 1명의 후보 선수</u>	▪제104회 전국체전 때 워밍 업(1시간~1시간30분) 중 참 가 선수가 부상(충남, 대전,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전 성립을 위해 무리하게 경기 참가 사례 발생 ▪선수 보호 필요
사격	[경기규칙] ▪결선 경기 시 메달매치 방 식 (기록 대비 미실시로 신기록 발생 없음)	[경기규칙] ▪ <u>결선 경기 기록집계 운영으 로 신기록 발생 처리 실시</u> <u>적용 요청</u> ▪ <u>국내종합경기대회 운영시스 템의 변경 필요</u> (전국체전 사격종목 결선 적 용 종목 : 16개 종목 / 러닝 타켓 제외)	▪국제사격연맹 결선규칙 방식 변경 ▪현재 결선 방식 작년 기준 메달 메치 결선 운영 방식으 로 결선기록 인정 미실시
조정	[참가요강]	[참가요강]	▪현재 에이트 종목의 경우

	1. 종별 및 종목 · 종목 : 에이트 · 종별 : <u>남자부</u> 2. 참가자격 · 에이트(<u>남자부</u>) 및 무타페어(여자부)는 18세이하부, 대학부 또는 18세이하·대학·일반부 선발팀도 가능함.	1. 종별 및 종목 · 종목 : 에이트 · 종별 : <u>일반부</u> 2. 참가자격 · 에이트(<u>일반부</u>) 및 무타페어(여자부)는 18세이하부, 대학부 또는 18세이하·대학·일반부 선발팀도가능함. <u>단 에이트의 경우 코스는 여자 선수도 참가 가능함.</u>	남자부로 종별이 되어 있어 여자 코스가 참가 할 수 없음 ▪세계조정연맹(WR) 규정은 코스는 성별 구분 없이 참가 가능 ▪세계조정연맹 규정 준용
수영	[참가요강] 참가인원 ▪ 수구: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3명 이내	[참가요강] 참가인원 ▪ 수구: 감독, 코치, 주무, <u>트레이너 또는 팀닥터</u> 외 선수 13명 이내	▪부상 위험이 높은 수구종목 특성상 트레이너 및 팀 닥터 등 필요
자전거	[참가요강]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8종목) · <u>독주 500m</u> : <u>일반부(여), 18세이하부(여)</u> · 독주 1km : <u>일반부(남)</u> : <u>18세이하부(남)</u> · <u>개인추발 2km</u> : <u>18세이하부(여)</u> · 개인추발 3km : 18세이하부(<u>남</u>) : <u>일반부(여)</u> · 개인추발 4km : 일반부(<u>남</u>) 2. 참가자격	[참가요강]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8종목) · <u>독주 500m</u> : <u>일반부(여), 18세이하부(여)</u> · 독주 1km : <u>일반부(남,여)</u> : <u>18세이하부(남,여)</u> · <u>개인추발 2km</u> : <u>18세이하부(여)</u> · 개인추발 3km : 18세이하부(<u>남, 여</u>) : <u>일반부(여)</u> · 개인추발 4km : 일반부(<u>남, 여</u>) 2. 참가자격 <u>*여자부(일반부, 18세이하부)는 종목의 거리변경으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기준기록 한시적 미 운영 (독주 1 k m , 개 인 추 발 3km,4km)</u>	▪UCI(국제사이클연맹)규정 변경 ▪독주, 개인추발 등 일부 종목 거리 조정 예정(2025.08부터 시행) ▪현재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포인트 부여 대회 ▪여자부 거리 증가 ▪국내 종목 출전 선수의 국제 대회 국제 경쟁력(체력 강화 등) 확보 ▪독주, 개인추발 거리 수 조정 시 여자부(일반부, 18세 이후)기준 기록 적용 제한

	3. 참가인원 · 1인 2종목 이내 참가(매디슨, 단체종목, 도로종목, 마운틴바이크종목은 제외)할 수 있으며, 트랙개인경기 및 마운틴 바이크에 참가한 선수가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매디슨, 도로개인독주 및 개인도로경기에 참가할 경우 1인 2종목 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3. 참가인원 · 1인 2종목 이내 참가(매디슨, 단체종목, 도로종목, 마운틴바이크종목은 제외)할 수 있으며, 트랙개인경기 및 마운틴 바이크에 참가한 선수가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매디슨, 도로개인독주 및 개인도로경기에 참가할 경우 1인 2종목 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매디슨 종목은 채점 방식에서 벨로드롬 경기(개인종목) 분류 ▪매디슨의 종목 보급을 위해 1인 2종목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 1명의 특정 선수가 트랙 8종목 중 매디슨, 단체종목 2개, 개인종목 2개로 최대 5종목 출전가능
--	---	---	---

농 구

1. 종 별

가. 남자 : 18세이하부, 일반부(대학부 포함)

나. 여자 : 18세이하부, 일반부(대학부 포함)

다. (시범종목) 3x3 남자 : 일반부(대학부 포함)

2. 참가자격 : 2024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선수로 구성된 팀

가. 2024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단일팀

나.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KBL) 및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등록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3. 선발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2인 이내 (시범종목) 3x3 - 감독 외 선수 4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나. 1회전부터 결승전까지 무승부일 경우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5분)을 시행한다.

다. (시범종목) 3x3 경기는 예선 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 2점 선취 팀의 승리로 진행한다.

5. 선발방법 : 광주광역시농구협회 선수 선발규정에 의함 ※ 특별한 경우 대한농구협회 경기운영 규정에 의함